

工業配置法

1977년12월31일

法律第3,069號

국회에서 의결된 공업배치법을 이에 공포한다.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법은 工業을 合理的으로 配置하여 適正한 工場立地를 造成하고 工場의 再配置를 促進함으로써 過度한 工業의 集中을 防止하여 均衡있는 國民經濟의 발전과 國民福祉의 增進에 寄與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用語의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工場”이란 함은 製造業(物品의 加工·修理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物品製造工程(加工·修理工程을 포함한다)을 形成하는 機械 또는 裝置가 設置된 建築物 또는 事業場을 말한다.
2. “移轉促進地域”이라 함은 産業의 密集도와 人口增加率이 顯著히 높아 工場의 移轉이 필요한 大都市 및 그 周邊地域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地域을 말한다.
3. “制限整備地域”이라 함은 産業의 密集도와 人口增加率이 높아 工場의 新設 또는 增設의 制限이 필요한 地域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地域을 말한다.
4. “誘致地域”이라 함은 産業의 密集도가 낮아 工業의 誘致와 雇傭의 增大가 필요한 地域으로서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地域을 말한다.

第3條 (處分行為 등의 承繼에 대한 効力)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命令의 規定에 의한 處分節次 기타의 行為는 그 行為의 對象이 된 工場에 대하여 所有權·기타의 權利를 가진 者의 承繼人에 대하여 그 効力を 가진다.

第2章 工業配置基本計劃

第4條 (工業配置基本計劃) ① 商工部長官은 全國土의 工業配置에 관한 基本計劃(이하 “工業配置基本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고,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業配置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工業의 年度別·業種別·地域別配置에 관한 事項.
2. 移轉促進地域 또는 制限整備地域에서 誘致 地域으로의 工場移轉에 관한 事項

3. 工場用地의 長期需要에 관한 事項

4. 業種別·地域別 公害의 豫防과 環境保全·整備에 관한 事項

5. 기타 工業配置에 관한 主要事項

③ 商工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業配置基本計劃을 樹立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部處의 長과 協議하고, 工業配置審議委員會의 部處의 長과 協議하고, 工業配置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業配置基本計劃은 國土建設 綜合計劃土地利用計劃 등 다른 國土利用計劃과의 調和를 이루어야 한다.

⑤ 商工部長官은 工業配置基本計劃의 推進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工場用地의 需給計劃을 作成하고, 이를 農水産部長官에게 각각 通報하여야 한다.

第5條 (工場立地의 調査) ① 商工部長官은 工業配置基本計劃의 樹立과 그 推進 및 工場立地의 基準設定을 위하여 地域別工業의 分布와 特性 工場用地의 利用狀況·電力·用水·輸送條件 등 工場立地의 調査를 定期的으로 實施하여야 한다.

②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이하“道知事”라 한다)던 管轄 地域내의 工場의 運營實態와 工場立地 動向을 調査하여 工場配置에 관한 필요한 事項을 商工部長官에게 建議할 수 있다.

③ 商工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建議에 따라 全國土의 工場立地 狀況을 記錄·備置하고 이를 基礎로 製品別 單位生産에 필요한 用地·從業員·電力·用水의 標準所要量을 設定하여 工場立地行政의 指針으로 活用하여야 한다.

第3章 工場의 立地

第6條 (工場立地의 基準告示) 商工部長官은 關係 部處의 長과 協議하여 다음 各號의 事項에 관한 工場立地의 基準(이하 “立地基準”이라 한다)을 定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1. 製造業種別 工場建築面積에 대한 垜地面積의 比率(이하 “基準工場 面積率”이라 한다)

2. 工場用地的 綠地帶 등 環境施設의 設置
3. 特定地域에 관한 製造業種別 立地條件
4. 公害業種(施設·物質을 포함한다)의 立地制限

第7條 (工場設置의 申告) ① 工場垡地面積 또는 工場建築面積의 合計가 大統領令이 定하는 規模 이상의 工場(大統領令이 定하는 業種의 工場을 제외한다)을 新設(建物을 既存 사용하여 製造業을 營爲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增設하고자 하는 者는 그 設置工事を 着手하기 전에 商工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 그 工場設置에 관한 許可·認可·免許 등(이하 “許可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事項중 商工部令이 定하는 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第1項과 같다.

第8條 (立地變更 등의 勸告) ① 商工部長官은 第7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받은 경우에 이를 審査하여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立地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工場의 立地를 變更하게 하거나 立地基準에 適合한 施設의 設置를 할 것을 勸告할 수 있다.

第7條 第1項 但書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勸告는 그 申告가 있는 날(第1項 後段의 경우에는 許可등의 申請을 한 날)로부터 商工部令이 定하는 期間내에 하여야 한다.

第9條 (調整命令 등) ① 商工部長官은 第8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勸告를 받은 者가 그 勸告에 응하지 아니하고 工場을 設置함으로써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工場立地 또는 事業計劃의 調整 또는 變更을 命할 수 있다.

1. 工場의 設置가 工業配置基本計劃의 地域別配置에 顯著히 反하는 경우
2. 工場建築面積이 基準工場面積率에 顯著히 未達되어 過多한 基準工場面積率에 用지가 遊休化되는 경우
3. 第6條 第3號 또는 第4號의 立地基準에 反하여 周邊地域의 自然條件을 顯著히 害하게 되는 경우
4. 당해 工場의 設置로 인하여 既設工場의 立地條件을 顯著히 害하게 하는 경우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整 또는 變更의 命令은 第8條 第1項의 勸告를 한 날로부터 商工部令이 定하는 期間내에 하여야 한다.

第10條 (權利·義務의 承繼) ① 第7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者(第7條 第1項 但書의 規定에 해당되는 경우의 者를 포함한다. 이하 또는 合併 같다)로부터 工場을 讓受한 者는 그 工場에 관한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② 第7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者에 관하여 相統 또는 合併이 있는 때에는 그 相統人후 存統하는 法人이나 合併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은 그 工場에 관한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第11條 (過多工場用地에 대한 措置) ① 商工部長官은 第7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者의 工場建築面積이 工場設置를 完了한 날로부터 大統領令이 定하는 期間내에 그 基準工場面積率에 未達된 경우에는 그 申告의 內容에 따른 工場用地的 活用 등 필요한 指示를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이 경과된 후 大統領令이 定하는 期間내에 工場建築面積이 基準工場面積率에 未達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工場의 業種別 基準工場面積率에 따라 算出된 過多工場用地(이하 “基準超過用地”라 한다)에 대하여 地方稅法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同法 第188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法人의 非業務用土地로 본다.

③ 商工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이 경과된 때에는 그 基準超過用地에 관한 內容을 管轄市長(서울 特別市長·釜山市長을 포함한다) 郡守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은 製造業의 種別에 따라 달리 定할 수 있다.

第12條 (基準超過用地의 賣却 등)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11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이 경과된 후 大統領令으로 다시 定하는 期間내에 第7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者의 工場建築面積이 基準工場面積率에 未達된 때에는 그 基準超過用地를 工場用地的 所有者를 代身하여 賣却하거나 大統領令이 定하는 者로 하여금 賣却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賣却을 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그 趣旨를 工場用地的 所有者에게 豫告하고, 事前協議하여야 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工場用地的 賣却節次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④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場用地를 賣却할 때에는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移轉하는 工場(이하 “移轉工場”이라 한다)의 所有者에게 優先賣却하여야 한다.

第4章 工場의 再配置

第13條 (工場設置 등의 制限) ① 移轉促進地域과 制限整備地域안에서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移轉促進地域안에서의 工場의 增設, 制限整備地域안에서의 工場의 新設·增設과 移轉促進地域 또는 制限整備地域 안에서의 工場의 移轉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工場의 新設 또는 增設
2. 工場用地的 造成
3. 工場의 移轉

②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工場의 新設·增設 또는 移轉을 하고자 하는 者는 商工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③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工場의 新設 또는 增設에 대하여 地方稅法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同法 第112

條 第3項 및 同法 第188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大都市안의 工場新設로 본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때에는 第7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第14條 (既存工場の 登録) ① 移轉促進地域과 制限整備地域안에 工場을 所有(賃措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고 있는 者는 그 地域을 定하는 大統領令의 施行日로부터 商工部令이 定하는 期間내에 道知事에게 登録하여야 한다. 登録事項을 變更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道知事が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場の 登録을 받은 때에는 그 內容을 商工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道知事は 工場登録簿를 備置하고 필요한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④ 商工部長官은 工業配置基本計劃의 樹立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移轉促進地域과 制限整備地域 이외의 地域에 工場을 所有하고 있는 者에게도 管轄道知事에게 그 工場을 登録하게 할 수 있다.

⑤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은 第4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15條 (移轉命令등) ① 商工部長官은 移轉促進地域에서 移轉하여야 할 工場을 指定하여 그 移轉을 命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移轉命令의 對象이 되는 工場의 범위, 移轉命令의 節次,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③ 商工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場의 移轉命令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移轉하여야 할 工場의 범위, 移轉時期 등을 定하여 一定期間 公告하여야 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移轉命令을 받은 工場의 所有者는 그 命令을 받은 날로부터 2年내에 그 工場의 移轉을 完了하여야 한다.

다만, 商工部長官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부득이한 事由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期間의 범위안에서 그 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⑤ 商工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場의 移轉을 命하거나 第4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그 期間을 延長한 때에는 그 內容을 道知事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⑥ 商工部長官은 工場移轉記錄簿를 備置하고 필요한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第16條 (誘致地域의 指定) ① 商工部長官은 全國土에 걸친 工業의 適正한 配置를 기하기 위하여 工業의 集中的인 誘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地域을 誘致地域으로 指定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誘致地域은 다음 各號의 要件을 갖춘 地域中에서 이를 指定하여야 한다.

1. 工業의 密集度가 낮은 것.
2. 人口 및 工業의 收容效果가 클 것.
3. 既存産業과의 系列化를 기할 수 있을 것.
4. 工場用地·用水·電力등 支援施設의 整備가 容易할 것.

③ 商工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誘致地域을 指定한 때에는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第17條 (工業誘致計劃) ① 商工部長官은 第16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誘致地域을 指定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工業配置基本計劃에 따라 工業誘致計劃을 樹立하여야 한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業誘致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誘致地域豫定地의 位置 및 범위
2. 誘致하고자 하는 工場의 業種 및 그 規模
3. 誘致工場에 필요한 勞動力의 需給
4. 工場用地의 확보
5. 通信施設·職業訓練施設·醫療施設·教育施設 기타 大統領令이 定하는 施設의 整備

③ 商工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業誘致計劃을 樹立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管轄道知事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部處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第18條 (誘致地域안의 財産處分)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誘致地域안에 所有하는 工場用土地를 賣却하고자 할 때에는 移轉工場의 所有者에게 優先賣却한다.

第19條 (都市計劃등의 優先 實施)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誘致地域안의 道路·水道·住宅등 都市計劃事業을 優先 實施한다.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誘致地域안의 通信·厚生福祉·職業訓練·保健醫療·教育文化 등 支援施設의 整備를 優先 推進한다.

第20條 (誘致地域안에서의 工業團地의 造成) ① 誘致地域안에 工業團地를 造成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그 工業團地豫定地에 대하여 商工部長官의 指定을 받아야 한다. 指定받은 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商工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業團地豫定地를 指定 또는 變更한 때에는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業團地豫定地는 國土利用管理法 또는 都市計劃法에 의한 用途地域에 적합한 地域이어야 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業團地의 造成에 관하여는 都市計劃法 第23條 내지 第30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⑤ 産業基地開發促進法에 의하여 指定된 産業基地開發區域에 대하여는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21條 (工業整備特別區域의 指定) ① 商工部長官은 工場의 過度한 集中과 그 無秩序한 擴散을 防止하고, 週邊地域의 環境保全을 기하기 위하여 특히 工場의 整備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地域이 있을 때에는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이를 工業整備 特別區域으로 指定할 수 있다.

② 商工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業整備特別區域을 指定한 때에는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第22條 (工業整備實施計劃) ① 道知事は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工業整備特別區域의 指定이 있을 때에는 工業整備實施計劃을 樹立하여 商工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이를 施行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業整備實施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整備하여야 할 業種의 工場 및 그 規模
2. 工場의 配置
3. 施設의 整備
4. 기타 工業整備에 필요한 事項

第23條 (工場 등 設置의 制限) ① 工業整備特別區域안에서는 工業整備實施計劃의 目的에 違背되는 工場(機械 및 裝置를 포함한다. 이하 “工場 등”이라 한다)을 新設 또는 增設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場 등의 범위 및 그 規模 등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4條 (整備命令 등) 道知事は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工業整備實施計劃의 施行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整備對象工場을 指定하여 施設의 改修 등 필요한 措置를 命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의 범위 안에서 期間을 정하여 移轉을 命할 수 있다.

第25條 (工場移轉의 申告 등) ① 移轉促進地域·制限整備地域 또는 工業整備特別區域안에서 誘致地域이나 기타의 地域(移轉促進地域·制限整備地域·誘致地域·工業整備特別區域을 제외한 地域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그 工場을 移轉하고자 하는 者는 商工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事項중 商工部令이 정하는 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때에는 第7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③ 第8條 및 第9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者에게 이를 準用한다.

第26條 (移轉工場의 優先支援) 國家 또는 地方 自治團體는 移轉工場에 대하여는 優先支援하여야 한다.

第27條 (移轉工場의 既存用地의 買入活用 등)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移轉工場의 既存用地를 優先買入하거나 都市環境의 保全을 위하여 活用되도록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第28條 (租稅의 減免措置) 移轉促進地域·制限整備地域·工業整備特別區域안에 있는 工場을 誘致地域이나 기타의 地域으로 移轉하는 者 또는 誘致地域안에 工場을 設置하여 事業을 營為하는 者에 대하여는 租稅減免規制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租稅를 減免한다.

第29條 (移轉命令의 違反에 대한 措置) ① 商工部長官 또는 道知事は 移轉命令을 받은 工場은 第15條 第4項 또는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移轉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機關의 長에게 당해 工場에 대한 電氣·電話·水道의 設置나 그 供給을 中止할 것을 要請할 수 있다. ② 商工部長官 또는 道知事は 移轉命令을 받은 工場이 第15條 第4項 또는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期間이 경과된 후 大統領令으로 다시 정하는 期間내에 工場을 移轉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事業을 營為할 때에는 2年の

범위안에서 그 期間을 정하여 당해 事業의 全部 또는 一部の 停止를 命하거나 關係機關의 長에게 당해 事業의 停止 또는 取消를 할 것을 要請할 수 있다.

③ 關係機關의 長이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要請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第15條 第1項 또는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移轉命令에 違反하여 移轉하여야 할 期間을 경과한 工場에 대하여 地方稅法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그 期間이 경과한 날로부터 同法 第112條 第3項 및 同法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大都市안의 工場新設로 본다.

第5章 工業配置審議委員會

第30條 (工業配置審議委員會의 設置) ① 이 法에 의한 工場의 再配置와 工場의 立地調整에 관한 중요한 事項을 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商工部に 工業配置審議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委員會의 構成·機能 및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章 支援 및 監督

第31條 (政府의 財政支援) 政府는 移轉工場 또는 誘致地域안에 工業團地를 造成하는 者의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費用에 대하여 財政的 支援이 필요한 때에는 資金管理特別會計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資金의 一部를 融資할 수 있다.

1. 工場用地의 造成費用
2. 工場의 移轉費用
3. 工場의 建設費用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費用

第32條 (보고 및 檢査) ① 이 法에 의하여 工場을 新設 또는 增設한 者가 그 工場의 建設을 完了한 때에는 商工部令이 정하는 書類를 첨부하여 建設을 完了한 날로부터 1月내에 商工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商工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工場의 運營狀況을 檢査하게 할 수 있으며, 그 檢査결과에 따라 工場의 所有者에게 施設의 改修 등 필요한 措置를 指示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關係인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④ 商工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移轉促進地域·制限整備地域·誘致地域·工業整備特別區域 또는 기타의 地域안에 工場을 所有하고 있는 者 및 移轉工場의 所有者나 占有者에게 工場立地 또는 工場의 建設 등에 관한 필요한 事項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第7章 補 則

第33條 (地域등의 指定) 이 法에 의한 移轉促進地域등의 범위는 行政區域單位로 指定함을 原則으로 한다.

第34條 (協 調) ① 商工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申告의 受理 또는 許可를 한 때에는 그 內容을 관계機關의 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② 建設部長官이 移轉促進地域·制限整備地域·誘致地域 또는 工業整備特別區域안에 國土利用管理法 또는 都市計劃法에 의하여 工業地域을 指定 또는 變更하거나 細分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商工部長官과 協議 하여야 한다.

第35條 (建築許可등의 制限) 관계機關의 長 또는 道知事는 이 法에 의한 工場의 新設 또는 增設의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工場의 新設 增設 또는 移轉의 許可를 받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는 관계 法令에 의한 工場用地의 造成, 工場의 建築許可 또는 營業등의 許可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36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 第7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第25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한 때에는 國土利用管理法 第15條 第5項, 第16條 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第7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때에는 經濟의 安定과 成長에 관한 緊急命令 第58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③ 第7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때에는 地方工業開發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立地指定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誘致地域의 指定이 있는 때에는 地方工業開發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工業開發法獎勵地區의 指定이 있는 것으로 본다.

第37條 (權限의 委任·委託) 商工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機關의 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託하거나 다른 行政機關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第38條 (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章 罰 則

第39條 (罰 則) 다음 名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1,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7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工場을 新設 또는 增設하거나 同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虛偽로 한 者

2. 第9條 第1項(第25條 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者

3. 第13條 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거나 同條 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工場을 新設·增設 또는 移轉한 者

4. 第23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工場등을 新設 또는 增設한 者

5. 第25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工場을 移轉하거나 同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虛偽로 한 者

第40條 (罰 則) 第29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停止命令에 違反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41條 (罰 則) 第32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拒否· 방해 또는 忌避한 者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42條 (過怠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1.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한 者
- 2. 第32條 第1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偽의 보고를 한 者

第43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39條 내지 第41條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處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附 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過多工場用地에 대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당시 工場을 設置하고 있는 者는 이 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② 商工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의 工場 建築面積이 이 法 施行日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이 경과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基準工場面積率에 未達되는 경우에는 당해 目的에 相應한 活用이나 處分등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指示할 수 있다.

②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이 경과된 후 大統領令으로 다시 정하는 期間이 경과될 때까지 그 工場 建築面積이 基準工場面積率에 未達되는 경우에는 그 基準超過 用地에 대하여 地方稅法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同法 第188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法人의 非業務用土地로 본다.

④ 第11條 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은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3條 (工業開發獎勵地區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地方工業開發獎勵地區는 이 法에 의하여 指定된 工業開發獎勵地區는 이 法에 의하여 指定된 誘致地域으로 본다.